

# 건축법 시행규칙중 개정령

##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976년 7월24일 건설부장관

제1조 제1항중 “(2)난내지 (12)난중”을 “(2)난내지(13)난중”으로 하고, 동조 동항의 표 후단에(13)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건축물의종류	도시의종류	축 척	표시하여야할사항
(13)	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야 할때	토지의 지형 평면도	임 의	축척 및 종·횡단선
		종·횡단면도및구조물 상세도		축척·단면상세(인접) 토지를 포함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(정본) 및 별지 제1~2호 서식(정본)중 “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”를 “건축법 제5조 및 도시 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(부분) 및 별지 제1~2호 서식(부분)중 “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을 허가함”을 “건축법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함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~2호 서식중 “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”를 “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를 완료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 서식 및 제7~2호 서식중 “건축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함”을 “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공사를 검사한 결과 건축법의 규정 및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내용에 적합함을 증명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